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2298호
2026년 8월 7일
금요일

공 고

- 공 고 제 1476 호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문 화 관 광 과 2
- 공 고 제 1482 호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 획 예 산 과 9
- 공 고 제 1483 호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 획 예 산 과 25
- 공 고 제 1484 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 획 예 산 과 34
- 공 고 제 1485 호 남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노 인 정 책 과 42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6-1476호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6.

남동구청장**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상위법령 용어의 개정으로 법령 및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 및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불부합 용어 정비 : (안 제38조제3항)

3. 입법예고기간 : 2026. 8. 6. ~ 8. 26. (20일간)**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문화관광과
- 연 락 처: 전화 453-2132 FAX 453-2139
- 남동구 홈페이지(<https://www.namdong.go.kr>)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 용어의 개정으로 법령 및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 및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령불부합 용어 정비 : (안 제38조제3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용어 정비요청 공문(기획예산과-10649, 2026.7.16.호)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위탁운영 신청) (생략)	제38조(위탁운영 신청)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비영리법인 · 단체의 경우 정 관(규약) 및 <u>법인등기부등본</u>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 류 각 1부	3. ----- ----- <u>법인등기사항증 명서</u> ----- -----

[참고자료]

용어 정비요청 공문



내 삶이 바뀌는 남동대전환!

구
 $\frac{5}{10}$
 $\frac{1}{2}$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2026년(2025년 발굴)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차치법규파-109(2025. 12. 1.)호 및 법무담당관-14054(2025. 12. 5.)호, 市 법무담당관-8001(2026.7.14.)호와 관련입니다.

2. 2026년(2025년 발굴)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대상을 불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부서에서는 2026. 12. 31.까지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 정비요청사항: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붙임 기획정비 과제 목록 1부. 끝.

기 획 예 산 과 장

수신자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주무관 김민우 법무의회담당 장형걸 기획예산과장 전결 2026. 7. 15.
발령원

협조자

시행 계획예산과-10649

루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트 633, (만수동)

習字

전월 2025. 7. 16.
발행월

/ <http://www.nandong.go.kr>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6-1482호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7.

남동구청장**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민선9기 구정목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실·국의 설치(안 제3조)
- 행정자치국에 두는 부서 및 사무조정(안 제8조)
- 경제재정국에 두는 부서 및 사무조정(안 제9조)
- 문화교육국에 두는 부서 및 사무조정(안 제10조)
- 주민복지국에 두는 부서 및 사무조정(안 제11조)
- 안전교통국에 두는 부서 및 사무조정(안 제12조)
- 환경녹지국에 두는 부서 및 사무조정(안 제13조)
- 도시혁신국에 두는 부서 및 사무조정(안 제14조)
- 보건소에 두는 부서(안 제15조제2항)

3. 입법예고기간 : 2026. 8. 7. ~ 8. 11.

-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 단축사유 :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신속한 정비 실시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기획예산과
- 연 락 처: 전화 453-2052, FAX 453-2059
- 남동구 홈페이지(<https://www.namdong.go.kr/main/news/legislation.jsp>)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5.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8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민선9기 구정목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실·국의 설치: (안 제3조)
- 행정자치국에 두는 부서 및 사무조정: (안 제8조)
- 경제재정국에 두는 부서 및 사무조정: (안 제9조)
- 문화교육국에 두는 부서 및 사무조정: (안 제10조)
- 주민복지국에 두는 부서 및 사무조정: (안 제11조)
- 안전교통국에 두는 부서 및 사무조정: (안 제12조)
- 환경녹지국에 두는 부서 및 사무조정: (안 제13조)
- 도시혁신국에 두는 부서 및 사무조정: (안 제14조)
- 보건소에 두는 부서: (안 제15조제2항)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 같은 법 제13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남동구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과장·센터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전략사업추진단, 감사실, 소통협력실, 행정자치국, 경제재정국, 문화교육

국, 주민복지국, 안전교통국, 환경녹지국, 도시혁신국을 둔다.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기구·조직 조정, 자체평가
2. 구 의회 관련 업무
3. 예산편성 및 집행심사
4. 규제개혁, 지방이양 및 제안제도
5.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교류업무

제5조(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핵심 공약사항에 관한 업무
2. 전략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발전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소래지역 중장기 발전 업무
5.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6. 그 밖의 전략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감사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본청,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감사
2. 일상감사 및 기술분야 감사
3. 공무원의 비위조사처리
4. 상급행정기관 이첩민원 처리

제7조(소통협력실) 소통협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민 소통 계획 수립 및 총괄
2.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각종 단체와의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3. 갈등관리 관련 업무 총괄
4. 직소민원 응대 및 조정
5. 주민고충, 집단민원, 특이민원 처리

제8조(행정자치국) ① 행정자치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홍보미디어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복무 및 후생복지
2. 규정운영 및 시책전반
3. 행정구역 조정
4. 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
5. 선거 및 국민투표
6.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
7.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총괄
8.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민원·가족관계등록부·여권에 관한 업무
10. 주민등록관리
11.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
12. 규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13. 보도계획 수립 및 규정홍보 대상 발굴

14. 언론 정례 브리핑 및 기획보도계획 수립
15. 소셜미디어 운영사무
16. 홍보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17. 구보 및 구 소식지 발간에 관한 사항
18. 주민 다중이용시설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19. 개별공사지가의 조사 및 산정
20.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

제9조(경제재정국) ① 경제재정국에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및 세무2과를 둔다.

② 경제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지원 및 일자리기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구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무
4.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
5. 기업지원 및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지역경제 및 친환경에너지에 관한 사항
8. 일반회계 계약·지출 및 결산
9. 재산관리 및 물품관리
10. 공공시설의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무
11.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12.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무

제10조(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여성가족과 및 보육정책과를 둔다.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문화유산·관광문화 진흥에 관한 사무
2.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각종 체육시설 관리 및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7.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
8.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9.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10.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12. 보육지원 및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등

제11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정책과, 장애인지원과, 사회보장과 및 아동복지과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호국보훈 및 의사상자에 관한 사무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3. 긴급복지지원 및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및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5. 사할린 업무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7.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8.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9.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12조(안전교통국) ① 안전교통국에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식품위생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재해 대비 안전총괄 및 조정
2.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비상대책 수립
4.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등에 관한 사무
6.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
7.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동차등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무
9.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0. 자동차관리사업자 관리, 무보험 운행 사건 송치 등
11.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사무

12. 식품위생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관한 사무
13.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14. 정보화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등

제13조(환경녹지국) ① 환경녹지국에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및 농축수산과를 둔다.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
2. 쓰레기무단투기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3. 음식물폐기물 자원화·감량화에 관한 사항
4. 사업장폐기물 및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개인하수시설 및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원·녹지·쉼터 조성 및 관리
10. 산림보호, 조림, 숲 가꾸기 사업 등에 관한 사항
11. 도시경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12.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13.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불법 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14. 농·축·수산업에 관한 사항

제14조(도시혁신국) ① 도시혁신국에 도시계획과, 도로과, 치수과, 주거
정비과, 건축과 및 공동주택과를 둔다.

② 도시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도로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무
6. 도로, 도로조명 시설물 관리
7.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방재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하천, 지하수,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등
9.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0. 빈집정비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의 허가·신고·사용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대장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14. 주거급여사업에 관한 사무

제3장 직속기관 (보건소)

제1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
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및 마음건강과를 두고 의료취약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③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두고 보건소장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담당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담당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하부 행정기관(동)

제18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洞)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및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9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 조직 운영,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 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

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3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남동구 보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 일원
남동구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41번길 18	간석1.2.3.4동, 만수2.3동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6-1483호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7.

남동구청장**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조직 개편에 따라 남동구청장이 위임한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삭제(안 제1조, 제2조)
-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삭제(별표 2-1)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 3)
 - 주민등록사무 소관부서 민원여권과로 조정

3. 입법예고기간 : 2026. 8. 7. ~ 8. 11.

-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 단축사유 :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신속한 정비 실시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기획예산과
- 연 락 처: 전화 453-2052, FAX 453-2059
- 남동구 홈페이지(<https://www.namdong.go.kr/main/news/legislation.jsp>)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5.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17조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8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조직 개편에 따라 남동구청장이 위임한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삭제(안 제1조, 제2조)
-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삭제(별표 2-1)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 3)
 - 주민등록사무 소관부서 민원여권과로 조정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17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건소장),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
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
하는 사항은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2-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비고
구청장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명령	「남동구 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8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구청장 (민원여권과)	1.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단,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하되 구청장도 발급 처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4조 같은 법 제30조	
구청장 (재무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구청장 (노인정책과)	1.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2. 기초연금 신청처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기초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구청장 (장애인 지원과)	1. 장애인 등록 · 취소 및 장애 진단사항 확인 2.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구청장 (청소 행정과)	1. 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비고
구청장 (도시 디자인과)	1.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무 2.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봉사단체 운영 3.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지급 업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구청장 (토지 정보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및 처리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해제 신고 접수 및 처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3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보건소장)----- ----- ----- ----- -----.
제2조(위임사항) <u>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별표2”,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별표3”과 같다.</u>	제2조(위임사항) <u>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u>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6-1484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7.

남동구청장**남동구 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에 대한 정원 증원 및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높은 정책 성과를 달성하고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총정원) 1,347명 → 1,375명 (+28)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 (총 계) 1,347명 → 1,375명 (+28)
 - (일반직) 5급 69명 → 71명 (+2)
 - (일반직) 6급 이하 1,263명 → 1,289명 (+26)

3. 입법예고기간 : 2026. 8. 7. ~ 8. 11.

-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 단축사유 :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신속한 정비 실시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기획예산과
- 연 락 처: 전화 453-2052, FAX 453-2059
- 남동구 홈페이지(<https://www.namdong.go.kr/main/news/legislation.jsp>)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5.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8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에 대한 정원 증원 및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정책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총정원) 1,347명 → 1,375명 (+28)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 (총 계) 1,347명 → 1,375명 (+28)
 - (일반직) 5급 69명 → 71명 (+2)
 - (일반직) 6급 이하 1,263명 → 1,289명 (+26)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347명”을 “1,37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315명”을 “1,34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동
총 계		1,375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370	-			
	2급	1	1			
	4급	9	7	1	1	
	5급	71	41	2	8	20
	6급 이하 계	1,289	-			
별정직 계		4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남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u>1,347명</u>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u>1,375명</u> -----.
1. 집행기관 : <u>1,315명</u>	1. ----- <u>1,343명</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총계 : <u>1,335명</u>	<삭제>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6-1485호

남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7.

남동구청장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조문 내 표기된 도로명주소로 현행화하여 주소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정보 현행화(안 제2조 별표)

3. 입법예고기간: 2026. 8. 7. ~ 2026. 8. 27.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노인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노인정책과 /
☎ 453-2251, FAX 453-5859)

5. 참고사항

-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남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조문 내 표기된 도로명주소로 현행화하여 주소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정보 표기 현행화 (안 제2조 별표)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도로명주소법」 제3조, 제1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남동구노인복지관의 위치란 중 “문화서로62번길 13(구월동)”을
“소래로 610(수산동)”으로 하고, 같은 표 만수노인문화센터의 위치란 중
“백범로157번길 10”을 “만경로12번길 4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남동구 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칭	위치
남동구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10(수산동)
만수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12변길 45(만수동)

[참고자료]

□ 도로명주소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주소정보의 표기, 사용,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의 표기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 표기
3.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
4.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
5. 위치안내표시판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7. 그 밖에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와 관련된 사항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로 표기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이 아닌 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

물등의 소유자·점유자·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